

茶山 丁若鏞의 土地觀 小考

李 鍾 吉*

目 次	
I. 머리말	IV. 茶山의 井田制 土地論
II. 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實際	1. 序 言
III. 茶山의 閭田制 土地論	2. 井田制論의 檢討
1. 序 言	V. 맺는말
2. 閭田制論 檢討	

I. 머리말

實學의 集大成者 茶山 丁若鏞(1762년 英祖 38年 6月 16日 - 1836年 憲宗2年 2月22日)은 朝鮮朝 後期の 社會相을 流配라는 시대적 刑罰에 편승하여 냉철하고 公明하게 考究했던 人物의 代表的 存在이다.

조선조의 支配이데올로기인 性理學이 일면 現實을 直視하지 못하는 한계속에서 王을 중심으로 權力의 장악에 치중하던 무슴들을 露呈하고 있었으나 土禍와 黨爭의 自生的·自淨의 투쟁이 끊이지 못했던 바로 직후가 英祖의 治世期間이 된다. 蕩平策으로 四色을 고루 等용하는 政策을 펴게된 英祖는 兩亂이후 黨派에 따른 勢力다툼을 조정하면서 王朝의 새로운 부흥을 罔원하게 된다.

이미 退溪나 栗谷으로부터 일기 시작한 性理學의 學的發達은 점차 實生活과의 관계에서 性理學을 접근하는 學者들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바로 利用厚生·實事求是등의 實踐的 命題를 강조하는 實學派群을 形成하게 된다. 그밖에도 時代的 要求가

* 國民大學校 法科大學 講師

더 이상의 삶의 꺾박을 허용치 못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즉 17세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氣象異變과 農業의 피폐 그로인한 기근과 流民의 증가 및 人口의 격감 등으로 17세기가 당면한 一般的 危機속의 조선조 사회모습에 대한 이해의 전제가 요구된다.¹⁾

따라서 더 이상의 空論的·黨派的 論辯은 자리를 점할 수 없었으며, 이를 政治擔當者가 깊게 인식하는 상황에 이른 시대가 바로 1700年代 初半무렵 부터라 할 것이다. 그런만큼 현실상황의 극복을 위한 政策改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國王의 役割이 重大했던 당시였음을 생각할때, 書筵과 經筵을 통해 君主로서의 人格形成에 전전궁궁하던 英祖 大王으로부터 이의 實踐이 가능하게 됨을 생각할 수 있다.²⁾

茶山은 이러한 賢君의 治世時인 1762年(英祖 38年) 6月 16日 京畿道 廣州郡 草阜面 馬峴里(現在 南楊州郡 鳥安面 陵內里)에서 丁載遠(蔭仕로 진주 牧士를 지냄)의 4男으로 태어났다.³⁾

어려서의 字는 歸農·美庸이었고 號는 俊菴·茶山(어려서의 號는 三眉子), 堂號는 與猶, 姓은 押海 丁氏이다. 어려서부터 才能이 뛰어났으며 22세에 進士로 成均館(太學)에 들게 된다. 이때부터 茶山은 英祖(52년간재위)의 뒤를 이은 또 한사람의 현군 正祖와 만나게 된다.

이는 正祖自身이 好學君主였던 만큼 學人들과의 交流를 自請하였는데서도 기인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正祖는 보다 성숙한 政治改革을 기도해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茶山은 28세 되던 해(1789年)에 大科에 합격하므로써 마침내 官吏로서의

- 1) 이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위해서는 羅鍾一, 17세기 危機論과 韓國史, (역사학보 94·95 합병호, 1982)를 참조하기 바람.
- 2) 일반적으로 朝鮮朝에 있어 君主로서의 人品 및 資質 함양을 위한 필수과정으로서 書筵·經筵을 알 수 있으나, 특히 變換期에 처한 英祖의 經筵課程은 특별한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權延雄, 英祖代의 經筵, (한일문화교류 기금편, 1988)을 참조하기 바람.
- 3) 이하의 내용에 대해서는 尹絲淳編, 茶山의 生涯와 思想, 정약용(思想叢書I, 高大出版部, 1990.) 3~23면; 朴錫武, 茶山紀行, (朝鮮後期の 社會變動과 思想, 한길사, 1988) 89~93면 참조.

人生을 가꿔가게 된다. 禧陵直長을 시작으로 藝文館 檢閱(29세), 司諫院 正言(29-30세), 司憲府 持平(29-30세), 弘文館 修撰(31-33세), 京畿暗行御史(33세), 司諫院 司諫(34세), 同副承旨(34세), 左副承旨(35-36세), 谷山府吏(36세), 兵曹參議(35-38세), 副護軍(38세), 刑曹參議(38세)등을 10년여에 걸쳐 역임하던중 正祖의 승하(1799年)로 反轉된 삶의 場을 맞게 된다.

正祖의 총애를 받으며 學問의 研究와 實踐의 官職을 겸병해온 茶山은 南人執權과 西學保護가 그나마 가능했던 時代의背景의 상실로 아픈 政爭의 局面에 휩싸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⁴⁾ 따라서 純祖의 즉위와 함께 있게된 天主教人 處罰에 연루되어 流配를 가게되니, 1801年 2월 27일(純祖1年) 慶尚道 東海岸 長鬐縣(장기현)으로의 定配이다. 그런 몇개월후 또 다시 일어난 黃嗣永帛書事件으로 10월에 서울로 押送되었다가 同年11월에 오랜 流刑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全羅道 康津, 18年동안 學問의結實이 차분히 엮어지는 産室로 변모되는 곳이 된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茶山이 平生을 學問과 官吏·流配의 삶속에서 몸소 체험하고 비통해 하면서 社會的·政治的 不合理를 匡正하러 考究한 여러측면 중에서 土地에 대한 그의 思想의 一端을 소개해 보는 데 그치게 된다.⁵⁾

傳統的 農耕社會인 당시를 생각할 때 經濟的·政治的 諸問題의 根本은 農士이고 農業임을 周知할 수 있는 바, 이같은 고찰을 통한 일면적 접근은 나아가서 社會全般

4) 鄭爽鍾, 正祖·純祖年間の 政局과 茶山の 立場, (丁茶山과 그 時代, 民音社, 1986) 26~28면.

5) 茶山の 土地觀에 대한 앞선연구로 몇편의 주요논문들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金容燮, 丁若鏞과 徐有槩의 農業改革論, 창작과 비평, 1973. 慎鏞廈, 茶山 丁若鏞의 井田制 土地改革思想, 金哲堉박사 華甲紀念論叢, 1983

_____, 茶山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茶山研究의 現況, 民音社, 1985 姜萬吉, 茶山 土地所有觀의 研究, 碧史 李佑成교수 退任紀念論叢, 창작과 비평사, 1990.

_____, 丁若鏞時代의 經濟事情, 茶山과 그 時代, 民音社, 1986.

朴贊勝, 丁若鏞의 井田制論考察, 정약용, 高大出版部, 1990. 등

으로의 이해를 위한 始端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날 우리사회가 福祉를 指向하는 産業社會의 민주적 구조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土地問題를 기본으로 사회적 갈등이 점증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만큼 歷史가 제시해 줄지모를 解決案의 發見에 대한 기대 또한 茶山의 土地觀을 더듬게 되는 所以이기도 하다.

500年 朝鮮朝 歷史에서 새로운 부흥을 추진했던 英祖와 正祖年間, 그리고 純祖·憲宗代까지 4代 王代를 살아간 茶山을 土地觀이라는 한 부분에서 개괄적이거나 검토해 본다.

II. 朝鮮後期 土地所有의 實際

조선조 후기의 18·19세기는 특히 농민층의 분화가 급격히 진행된 시기이다. 農民의 經濟力 과다에 따라 自體內에서의 계층적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생산성이 높아져간 農土가 양반지주층, 서민지주층, 그리고 富農層에 집중되어 가는 한편 종래의 영세한 自營農層이 몰락하여 無土농민화 되어 가는 것으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의 實態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土地(農土)所有에 관한 표현을 살펴보기로 한다.

茶山은 호남지방에서 땅을 남에게 빌려주어 收穫하는 수를 5% 정도로, 자영하는 정도를 25%로 나머지 70%는 남의 농토를 빌려서 경작한 다음 稅를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

또 燕巖 박지원도 땅을 가진 自耕者는 10~20%도 못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만큼⁶⁾ 당시의 토지偏在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茶山보다는 약간 뒤시기이지만 1846년(헌종 2년)에 作成된 것으로 추정되는

6) 今計湖南之民 大約百戶 則授人田 而收其租者 不過五戶 其自耕其田者 二十有五 其耕人田 而輸之租 七十 (與猶堂全書 詩文集 「擬嚴禁湖南諸邑 佃夫輸租之俗 劄子」)

7) 有田 自耕者 十無一二 (燕巖集, 「限民名田議」)

晉州奈洞里의 量案분석 결과를 인용해 보기로 한다.⁸⁾

土地所有面積	구성비율	
	그지방 전체농민중구성비율	그지방 전체농지중구성비율
土地1結이상 所有 (지주층, 부농층)	5.8%	44.3%
50負 이상소유 (중농층)	9.7%	17.5%
25負 이상소유 (소농층)	21.7%	19.9%
25負 이하 소유 (빈농층)	62.8%	18.3%

이때도 물론 兩班層이 대지주였으나 양반층의 분화도 조선초와는 달리 다기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만큼 사회전체가 큰 변동의 와중에 들어 있음을 알게 된다. 아울러 위의 奈洞里 量案에서 나타나는 階層別(身分別) 소유실태를 살펴보면,

兩班層이 점하는 구성비율			
지주및 부농층	중농층	소농층	빈농층
8.1%	11.3%	25.6%	55%
平民, 賤民層이 점하는 구성비율			
지주및 부농층	중농층	소농층	빈농층
2.9%	7.6%	17%	72.5%

위와 같이 나타나는 바, 兩·賤의 신분에서 따른 경제력 保持가 기존의 관념과는 완전히 다른 실재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바로 토지소유와 신분적 特權이 점차 분리되면서 地主의 농민에 대한 수탈이 경제외적 측면에서 보다 경제적 수탈로 변모·강화되어감을 보여주는 자료로 평가할

8) 이에 대해서는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一潮閣, 1971)의 189~206頁를 참조함.

수 있게 된다. 따라서 經濟力 강화에 의한 여타 地位의 變動내지 상승가능의 기대로 土地保有를 강조하게 됨에 따라 農民중에 극히 일부는 富農·上戶의 등급에 속하게 되고, 대부분의 여타농민은 下戶·貧戶, 殘戶, 獨戶, 乞戶등으로 나누어짐으로서 多樣한 分화 구조를 결과하고 있다. 따라서 經濟力 保有에 의한 社會階層構造의 再編成은 貧富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키는 만큼 個人은 경제적 財貨의 획득에 盡力하게 된다.

그러므로 富者의 貧者에 대한 수탈이 보다 가혹해지게 되고, 이에대한 貧者의 최소한의 自救努力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같은 배경하에서 일부 지식인층에서는 富의 편제를 조정해 보려는 의도에서 制度改革이나 社會改革의 여러논리를 제기하게 되며, 집권세력층에서 이러한 조정노력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自淨努力을 하지않게 될때 사회는 견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으로, 바르지못한 상태가 응어리되어 표출되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집단적 저항인 民亂이 되는 것이다.⁹⁾

그러면 시대를 바꾸어 1988년 현재 우리나라 土地所有現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上位 5%의 人口	全國私有地 中 65.2% 所有
上位10%의 人口	全國私有地 中 76.9% 所有

그리고 88년 기준으로 과거 14년간 經濟規模變動 수치를 적기하면, 국민소득 3.1배 증가에 집값 4.7배 상승, 땅값 8.7배 상승을 결과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땅값 상승에

9) 茶山時代의 이해를 위해 한 표현을 참고해 본다.

「…… 이제는 대토지소유자 및 특권상인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보이는 봉건반동의 세력이 군림하여 하층의 中農 및 小農과 貧農·私商의 이해와는 반대되는 시책을 시행하여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니 이로부터 10년후가 되는 1811년의 서북지방에서의 이른바 <洪景未亂>은 저같은 정세속에서 폭발한 하층민중의 저항인 것이었다」

鄭奭鍾, 前揭論文, 40면에서 인용.

10) 朱宗桓, 토지공개념의 경제학적 성격, (주종환교수 회갑기념논총, 도서출판 한울, 1989) 참조.

따라) 생긴 資本利得이 總67조9천억원(이는 정부의 稅出全體의 3배, 국민총생산의 1/2)으로 계산되며, 이중의 77% 정도가 전체국민의 불과 10%의 上層人口에 귀속됨을 직시할 필요가 있게 된다.¹¹⁾

물론 직접 비교는 타당치 않지만 이같은 상황을 미루어 茶山시대의 土地問題와 오늘날 우리나라의 토지문제가 約 2세기의 시차를 뛰어넘어 공통하는 요인이 내재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게 된다.

III. 茶山의 閭田制 土地論

1. 序言

고려말의 부패와 혼란상을 匡正하며 새롭게 開創한 조선왕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創建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정치적·경제적 체모순들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 새로이 제기된 外侵으로 인한 어려움은 전근대적인 농업중심의 조선사회를 크게 혼란시키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노동력을 절약해야 하는 당시의 시대적 要求는 農事に 있어 移秧法을 開發하게 하였으며, 廣作農業으로 1인의 농토경작 가능면적을 확대 시키는 물론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의 農法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17C에 닥친 기상이변으로 인한 坼作에서 발생되는 기본적인 어려움을 타개해 보려는 農民 스스로의 지구의지에 의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태종때부터 일기 시작한 移秧의 시도¹²⁾는 점진적인 발전속에서 광작농을 가져오고 결국 조선왕조 후기의 상업농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형성하게 된다.

11) 또 다른 보고서에 의하면 땅값과 주식값의 상승으로 얻어진 불로소득이 85년까지만 해도 12조원(GNP대비, 15.4%), 86년 16조9천억원(18.6%), 87년 47조1천억원(44.6%), 88년 98조5천억원(79.7%), 89년에는 GNP대비 87.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겨레 신문 91.10.13. 1면)

12) 慶尙之民 當夏月 移種稻苗 若值旱乾 全失農業 自明年一禁(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6月)

茶山이 생존했던 正祖年間에 보면, 정조2년에 이미 70-80%의 畝를 移秧法에 따라 경작하며,¹³⁾ 정조 23년에는 호남민의 농업에서 直播은 1/100정도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¹⁴⁾ 그리고 直播에 비해서 移秧의 경우는 곡식생산이 배나 되며 노동력의 투여는 반밖에 되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농업의 개발로 자연히 상업농의 출현을 맞게 되는데 이는 시장의 발달을 전제한 농산물 유통의 구조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¹⁶⁾

이와같은 과정을 거시적으로 이해하면, 농업기술향상으로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오며, 이는 농가소득을 增大시키게 되는 것으로 이에 기초한 농촌사회의 性格變化를 초래하게 되는 만큼,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에서 財富의 偏在動因으로 이를 관념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전체구조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을 수반하고, 연이어 토지자본의 상품화를 가져온 결과 農民層 내부의 분화가 가속되는 현상을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이전에 비해 보다 비대해진 경제규모 및 사회변화에 의해 각 개인은 農土所有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의 시기를 영·정조 년간의 조선조 후기로 볼때, 茶山이 경험한 당시의 財富편재 및 토지의 집중화 결과로 나타난 無土農民의 증가등이 바로 토지 및 농업개혁을 구상하게 된 현실적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13) 盖今畚農 若爲十分 則移秧 幾過七八(正祖實錄 卷5, 正祖2年1月)

14) 湖南之民 專以注秧爲事 其所謂播種 乾付僅爲百之一焉(日省錄 正祖23年 5月 7日)

15) 付種則 生穀少 而注秧則生穀倍 注秧則 功力者半 而付種則 功力倍(日省錄 正祖 23年 3月 19日)

16) 驪州 利川之間 種稻先熟 得錢甚多(林園經濟志 倪圭志, 八城場市)

17) 姜萬吉, 茶山土地所有觀의 研究, (碧史 李佑成교수 退任紀念論集, 창작과 비평, 1990) 참조.

2. 閭田制論 檢討

앞에서 개관해본 土地所有에 기한 社會모습에서 茶山은 土地制度의 개혁을 위한 연구에 골몰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1799년 정조 23년인 38세때 「田論」이란 글을 통해 주창한 閭田制이다. 茶山의 閭田制 토지개혁론은 첫째 強豪의 土地兼併과 토지제도의 폐해를 除去하고 백성의 재산을 均制케 할 것을 중심된 과제로 전개한 것이다. 따라서 地主制度의 폐해를 극복하고 社會경제적 均등의 기초위에서 농업생산력을 증대시키려는 문제의식에서 閭田制는 출발하고 있다.¹⁸⁾

“하늘이 백성을 탄생시켜 먼저 그들을 위해 田地를 마련하였으며, 生者들로 하여금 먹고살게 하였고 또 그들을 위해 君主와 牧者를 세워 백성의 부모가 되게 하고, 그 산물을 고르게 얻도록 하여 모두 살게 하였다.”면서 관리들의 바른 治政으로 고르게 백성들이 잘살게 될 것을 天理로 관념하고 있다.¹⁹⁾ 그러나 관리와 強豪勢力家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원래의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빈·부의 차가 심각해 갔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대로 세력가들은 한사람이 수천석의 곡식을 가지고 百結이하의 땅을 가진자가 없다고 하니 일반백성들은 좁은 땅에 삶의 최소한의 토지도 마련할 수 없게되는 현실이 나타나게 된다.²⁰⁾

그런만큼 茶山은 均齊하고 均産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특권적 양반관료 및 부호들의 토지점병과 지주제도의 근본적인 철폐를 통하여 백성의 均産을 기도하고 있다. 또 그와 아울러 놓고 먹는 兩班士族을 점차 생산하는 집단으로 단호히 바꿔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당시의 閭田制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茶山이 주창한 閭田制의

18) 慎鏞廈, 茶山 丁若鏞의 閭田制 土地改革思想, (丁茶山研究의 現況, 民音社, 1985.) 참조

19) “天生斯民 先爲之置田地 令生而就哺焉 旣又爲之立君主牧 令爲民父母 得均制其産 而並活之……”(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一)

20) 今文武貴臣及 閭巷富人 一戶粟數千石者甚衆 計其田 不下百結 則是殘九百九十八人之命……(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一)

기본원칙은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 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²¹⁾ 이는 바로 耕者有田의 원칙을 제도화 하려는 茶山토지 사상의 始發이 되는 命題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까지 다른 實學者들이 주장했던 井田制, 均田制, 限田制등을 不當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井田을 施行할 수 없는 이유로는, 旱田이나 平地인 경우애나 적합한 토지 분배 방식인 만큼 우리의 水田이나 山地地形에는 적합치 않으며,²²⁾ 均田은 전체토지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戶口의 증감등을 바르게 반영해야 하는 것인데 이의 변화를 제때에 아는 것이 불가하며,²³⁾ 限田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활용하여 한전을 피해갈 때 이를 알 수 없음²⁴⁾이 가장 주된 이유들로 결국 여전제만이 당시의 실정에 유용한 것으로 지목하게 된다.

그러면 閭(마을)단위로 共同耕作·管理하며 그 果實을 노동력투하율에 따라 지급받는 여전제의 內容은 어떠한가.

閭田이란 산의 계곡과 내(川)의 흐름을 따라 경계를 획정하여 그 범위가 포괄하는 바를 閭라고 한다.²⁵⁾

“閭”에는 閭長을 두고, 一閭의 토지는 그 閭民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며 내땅 네땅의 경계를 없게한다. 오직 閭長의 지시에 따르며, 일을 한 것은 閭長의 祿을 떼어낸 다음

21) 使農者得田 不爲農者 不得田(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二)

22) 將爲井田乎 曰否 井田不可行也 井田者 旱田也…平地也…(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二)

23) 將爲均田乎 曰否 均田不可行也 均田者 計田與口…戶口增損 月異而歲殊(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二)

24) 將爲限田乎 曰否…藉我以人之名 而加之焉 熟知之乎…(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二)

25) 何謂閭田 因山谿川原之勢而劃之爲界 界之所函 名之曰閭(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三)

일을 한 만큼(장부의기록에 따라) 곡식을 배분토록 하는 것²⁶⁾이라고 설명하고 있다.²⁷⁾

이러한 여전제는 결국 자치적 共同農場이 되는 것으로 閭長의 農事指導에 따라 閭民들이 열심히 근로하고 그 댓가를 가을에 분배받되, 국가에 대한 租稅와 閭長의 관리책임 댓가를 우선 지불한 다음 개인의 몫으로 할당받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私田이 불허되며, 勞動力 투하에 따른 댓가의 배분인 만큼 無職兩班과 農村의 遊食者들이 추방되고 마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茶山은 이들 양반들을 당시 농업인구의 상대적 부족에 충원토록 하며 어떻게든 농촌에 머물게 하는 의도를 가졌던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기존의 소비만 하는 兩班보다는 生産擔當者로서의 양반, 그래서 그들의 知的 能力的 개발을 통해 農業技術의 향상을 도모하며, 근로하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農民 社會의 기강 및 건전풍토의 확립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아 당시 백성의 의식개혁까지를 관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양반이나 선비들을 閭에서 우대하게 되므로써 생산을 위해 모든 백성이 각자 자신의 역할을 반드시 담당토록 하고 있다.²⁸⁾

茶山은 이와같은 閭田制 토지개혁을 통해 당시의 土地問題를 해결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公家와 私家에서 엄청나게 징수하는 각종의 수탈체제를 바로잡으려 하였던 것이다. 결국 열심히 일한 일반백성은 아무런 댓가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國用으로 충실히 옮겨져 쓰이지도 못하는 당시의 편중된 富의 귀속을 목도한 상태에서 고안해낸 土地改革案이 바로 茶山の 閭田制라 할 수 있는 것이다.

26) 閭置閭長 凡一閭之田 令一閭之人 咸治厥事 無此疆爾界 唯閭長之命是聽 每役一日 閭長注於冊簿 秋既成 凡五穀之物 悉輸之閭長之堂 分其糧 先輸之公家之稅 次輸之閭長之祿 以其餘配之於日役之簿(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三)

27) 여기에서 茶山은 30戶를 1閭로, 3閭를 1里로, 5里를 1坊으로, 5坊을 1邑으로 편제할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때의 1閭 30戶는 당시 조선의 自然村落이 대략 30戶 내외였는 만큼 이를 반영한 것으로, “閭協業農場=自然村落協同農場=마을 共同體協同農場”의 現實化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慎鏞廈, 前揭論文, 202~204면 참조)

28) 與猶堂全書 第1集 詩文集 田論五

그러나 이는 私有 關係를 철저히 부정해버린 급진적 방안으로 현실성이 너무나 결여된 토지관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

IV. 茶山의 井田制 土地論

1. 序言

茶山은 學問的으로나 政治的으로 자신을 총애하며 많은 영향을 끼친 정조의 逝去(1800年 6月 28日, 정조 24年)로 급격한 變轉을 맞게 된다. 정조에 의해서 중용되어 官吏로서 정조의 측근을 유지해온 茶山은 天主教 신앙이 政的들의 性理學的 이데올로기에 배치됨을 기화로 정치적 어려움에 휩싸이게 된다.

따라서 정조 末年에는 평탄치 못한 관리생활이 계속되다가 급기야 정조의 승하에 이은 순조의 즉위로 南人이 老論 僻派에 의해 攻略되는 政變에 몰리게 된다.

이때 茶山은 天主教 신앙에 연루되어 조정에서 피체되는데, 이는 大王大妃 貞純王后 金氏(純祖가 어려서 英祖의 繼妃인 貞純왕후 金氏가 대왕대비로 政權을 장악하고 垂簾聽政을 하게됨)가 實權을 잡은 가운데서 내린 邪敎禁壓下敎(辛酉年 1801年 1月 丁亥(11日))로 부터 시발되는 것이다.²⁹⁾ 이로인한 天主教인들의 숙청은 적지않은 숫자에 미치게 되는데, 茶山도 체포된 상태에서 가해진 推考에서 결국 많은 신앙인을 自白을 통해 알려주게 되므로써 背敎에 가까운 행위를 결과하게 된다. 이런 推鞠을 거친후 茶山은 1801年 2月 26日에 비로소 경상도 東海邊方인 장기(長鬚)로 流配길을 떠나게

29) 茶山은 辛酉迫害로부터 시작된 流配를 통해 井田制論을 탄생시키게 되었지만, 1801년의 신유박해는 天主教탄압과 함께 進步의 사상가 및 정치세력을 숙청하고 19세기를 이른바 勢道政治時代 및 철저한 鎖國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하였다는 歷史的 評價를 내리기도 한다.(姜萬吉, 丁若鏞時代의 經濟事情, 茶山과 그 時代, 民音社, 1986. 47~70면 참조)

되며 兄인 若銓도 全羅道 康津縣 新智島로 가게된다.³⁰⁾ 그러한 몇개월후(9月) 다시 外國大舶의 請來를 기도한 『黃嗣永 帛書事件』이 발생함으로써 茶山은 서울로 압송되었고, 특별협약이 없으므로 인하여 大學者로서 자신을 새롭게 세워준 18年의 流配鄕 全南 康津으로 내몰리게 된다. 茶山의 井田制論은 바로 이러한 康津에서 解配되기 직전(56세때인 1817년, 1818년 8월에 解配됨)에 고안된 것인만큼 초기의 閭田制보다 現實的 實踐可能性을 보다 깊이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井田制論의 檢討

井田制는 閭田制에서 강조하는 均產(制產)과는 다르게,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田政을 合理的이며, 效率的으로 運營하므로써 農民들에게 가해지는 수탈을 방지하고 아울러 당시 국가의 存立마저 위태롭게 하는 官吏들의 各種不正을 봉쇄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井田法이란 田地의 效率을 最大로 하여 그 전반적인 國富의 增大를 도모하는 것인 만큼 당시에 논의되던 限田法이나 均田法등과 같이 국가에서 전국민의 생활을 균등하게 保障하려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하고,³¹⁾ 또 農者만이 農士를 가지며 산업중 이 農事가 가장 중요하되 국가는 각분야가 복합적으로 합해진 상태임을

30) 天主教 관련혐의로 체포되어 신문받은 전과정의 기록은 「推案及鞫案」(亞細文化社影印, 1978)에 자세히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茶山이 西學내지 天主教와 관련한 生涯에 대한 평가로는 다음의 圖式을 참고할 수 있다.

南人	┌	信西派	┌	西教派：李堯, 權日身, 李承薰, 丁若鍾, 洪樂敏等
				西學派：李家煥, 丁若銓, 丁若鏞等
			攻西派：洪樂安, 睦萬中, 李基慶等	

즉, 南人을 信西派와 攻西派로 나누고, 信西派를 다시 西教派와 西學派로 분류하여 본결과 茶山을 西學派에 위치시키고 있다.(姜在彦, 丁茶山의 西學觀, 茶山學의 探究, 民音社, 1990. 58~66면 참조)

31)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6

깨우친 속에서 均衡된 국가관리를 이룩해야 함을 중시하고 있다.³²⁾

그리고 閻田制에서 井田法 시행의 不可이유로 田質과 地形上의 不均을 들었는데, 그 당시 地勢의 不便과 民願의 變化를 감안하더라도 古代의 先王之法을 깊게 숙고하였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井田法 시행의 가능성에 확신을 부여하고 있다.

즉, “天下의 이치는 하나인 고로 지금 不能한 것은 요순임금 시절에도 不能이요, 요순시절에 가능한 것은 지금도 역시 해낼 수 있다.”³³⁾는 것이다.

그런만큼 茶山은 井田制에 대해서 상당한 집착을 가지고 經世遺表의 많은 부분을 이의 실천적 방안으로 논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井田制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1) 古代의 井田制에서는 田地를 우선 9區로 나누어서 8戶의 農家에게 各1區씩의 私田을 부여하고 1區는 公田으로 8戶의 農家가 共同耕作하여 이것을 國家의 租稅로 충당하게 한다. 또 1區의 면적을 100畝(六尺四方을 1步로 하고 이의 100배가 1畝이다)로 하고 1夫婦가 最大效果를 올리는 경작면적을 25畝로 보아서 100畝의 땅을 8名の 노동력이 경작할 때 가장 效果的이라고 한다.³⁴⁾

그리고 國家는 公田管理만 잘하면 되고 私田(원칙상 所有는 國家)은 公田을 耕作하는 한 平生가질 수 있는 田地로 구성함으로써 국가는 관리상의 부담을 덜게 된다. 私有分의 土地를 잘못경작하면 그만큼 個人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으로 모든 損失은 私有者가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 이다. 이는 오늘날에 있어 資本主義의 重要소인 노력한 만큼의 댓가 配當이 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個人 收益의 증대는 물론 全體(國家)收益의 증대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다.

32) 先王之意 非欲使天下之民 均皆得田 乃欲使天下之民 均皆受職 受職以農者治田 受職以工者 治器 商者治貨 牧者治獸…… 使名以其職得食 特職農者最多 先王重之而已 非欲使天下之民悉歸 於農職 又非欲使天下之民 盡得其田地也 農者得田 不爲農者不得田 唯土而已……(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6)

33) 天下之理也一也 今人之所必不能 亦堯舜三王之所不能 堯舜三王之所已能 亦今人所必能(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5)

34)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5

또 이미 있어오는 現在의 個人所有地에 대해서는 茶山이 심히 不滿스러워 하면서도 現在의 個人所有地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公田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井田法의 效果는 얻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그러나 茶山이 관념하는 土地所有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역시 國家所有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土地는 國家所有로 나아가게 될 것을 바라고 있다.³⁶⁾ 즉, 土地의 私有化를 없앴으로써 만이 地主가 수탈하는 地代를 폐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재정강화와 농민생활의 향상이 가능하게 된다는 一念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³⁷⁾

그리고 井田施行의 실제에 있어서 土地를 三年마다 交替해주는 것으로 何休가 제기한 운영법에 대해, 오히려 서로의 土地에 대한 관리와 지력증진노력을 게을리 할 우려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³⁸⁾

2)古代的 井田論을 당시의 朝鮮實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서 茶山은 많은苦心을 하게 되는데 중요사항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周代(古代)는 旱田이 많았으나 우리는 水田(논)이 많으며 또 地勢가 山林이 많은 등의 이유로 井田制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⁹⁾
- ② 周代에는 天子諸侯가 全土의 主人이었으나 지금 조선은 강호세력가들이 땅의

35) 天下田地를 다계산하여 우선 1/9을 公田으로 취할수 있게 한다면 古法의 半이라도 된다고 하면서 完全한 井田法 시행에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다.(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6)

36)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

37) 姜萬吉, 茶山의 土地所有觀, (茶山의 政治經濟思想, 李佑成교수 定年紀念論文選, 창작과 비평사, 1990) 145~153면 참조.

여기에서 姜萬吉교수는 茶山의 井田論이 “王有化를 指向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38) 民以此田 知之爲永業 然後除磽礧 去其茶蔘…厚其糞壤 若知三年知之後 按例換易 其誰肯爲是乎 荒天下之田者 必此法也(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5)

39) 古唯旱田 今多水田 又我邦之勢 山林多而原濕小 井田誠不可爲也(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5)

主人이라는 데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⁴⁰⁾ 따라서 茶山은 個人所有의 田地를 私田과 公田으로 分類해 내는 과제가 井田制 成敗의 관건으로 보고있는 것이다.

③ 그리고 기득권층 중에서도 土地改革施行에 반대할 官僚들이 가장 어려운 반대 세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改革反對는 國王의 決斷에 의해서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3) 그러므로 井田制는 地主官僚들의 反對를 國王의 決斷으로 차단한 다음 公田을 마련함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된다고 보고 있다.⁴¹⁾ 결국 公田의 마련이 井田制施行의 요체가 되는데 이를 위한 方案으로는 ㉠國家가 직접 買入하는 방법 ㉡私田主로부터 기증받는 방법등을 고안하게 되는데 보다 구체적인 생각을 살펴보면,

① 買入하더라도 지출된 비용은 모두 一般國民에게 다시 되돌려지며, 이는 國土안에 있게 되므로 언제든지 回收할 수 있는 국가재산으로 관념하고 있다. 또 이의 財源으로는 高額祿俸大臣의 봉급을 깎으며, 鑛山開發의 國營化를 통한 收入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⁴²⁾

② 一般田主로부터 기증받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이는 당시 官吏들의 不正이 심했던 만큼 公田耕作을 통해 모든 公稅가 없어짐으로서 官吏의 稅징수 不正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⁴³⁾ 아울러 私田기증을 위해서는 보상과 懲罰등을 적절히 방법론상 이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⁴⁴⁾

40) 若其所憂則有一焉 古者 天子諸侯爲田主 今也群黎 百姓爲田主 斯其難圖也(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

41) 經界者 天下重瓶之大事也 不可不嚴重其禮 古者發無施令 皆於宗廟 示不敢專也 況我邦之事 少有更張 必三可諸臣 喙喙爭鳴 發言盈庭 作舍道傍 宜先定聖志(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有表 卷7)

42)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

43) 貧民亡殆盡 民戶減縮 存者徭役倍重 積怨深悲 陞鬱在中 若聞朝廷行此大政 必有感憤激烈 出力以助成者 況其明效近朝夕 非若迂遠之事 經久乃成 其有明於利害者 屈指打算 計較得喪 亦必有欣然樂從者矣(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

44) …唯井地時占之人 有不循公議 專憑私慾 強梗機杼 沮戲大事者 監役參軍 得論報御史 嚴刑遠配…(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

- 4) 이렇게 해서 公田이 확보되면 井田論에 따른 村里組織의 再編成이 이루어 져야 하는데 農業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商·工業者들을 農村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公田管理를 위한 村監을 두며 8農家を 一井으로하여 井田制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⁴⁵⁾
- 5) 그리고 特定の 免稅地이던 당시의 官防田과 屯田의 處理에 고심하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官防田이 없어야 하는 것이나 우선 1/9의 徵稅가 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⁴⁶⁾
- 6) 그리고 平地가 많지 못한 우리의 실정을 생각할 때 區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平地는 井字모양으로 하고 地形이 고르지 못한 곳을 公田의 경계만 분명히 하고 地域에 따라서 융통성있게 구획하여 이를 漁鱗圖(田地의 面積에 따른 地籍圖로서 肥沃度는 고려되지 않음)라는 地積圖를 만들어 일목요연한 정리를 함으로써 평탄치 못한 지형임에도 井田制의 시행이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⁴⁷⁾

결국 富國을 위한 治田方案을 考究한 結實로서의 井田法은 官吏의 不正을 除去함으로써 국가와 백성이 함께 富를 共有하는 사상을 근거에 담고 있다. 이는 또 소수의 몇명에 편중된 土地所有를 “公有의 土地”라는 개념으로 전환시켜 백성들에게 일정량씩을 耕作또는 保有케 함으로써 獨立自營農에 기초한 農業生産力의 向上을 가져오며 이를 기반으로 合理的 管理經營이라는 새로운 발전으로 나아갈것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井田制는 農民個人에 대해 均産을 위한 農地分配가 결과되므로써 버림받은 農民이 아닌 “땅의 主人” 農民이 되어, 열심히 근로하고 賦를 담당하는 국민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茶山이 井田制를 통해 의도했던 가장 큰 效果중의 하나는 均賦의 실현이었다. 즉, 公田을 통해 모두가 賦役하며 賦稅를 담당하고 各人の 職에 따른 근로를 추구하는 만큼 國家全體가 富裕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제도인

45) 「…村里制度는 田地를 중심으로 ‘4井=1村, 4村=1里, 4里=1坊, 4坊=1部’로 하고 各長을 村監·里尹·坊老·部正으로 하되 村監은 權農官의 任을 맡게 한다…」(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8)

46)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8

47) 與猶堂全書 第5集 經世遺表 卷7·卷8 참조요

것이다.

中間階層의 不正을 제거하며 노력한 만큼의 댓가를 취득하게하고 農民이 農土(國土)의 主人임을 體得케 하도록(觀念上의 主人은 王이나 國家가 되지만) 힘써 마련한 茶山의 井田制는 오늘의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할 것이다.

V. 맺는말

茶山은 가난과 온갖 고통으로 시달리던 개개백성을 생각하는 데서 시작하여 國家 財政收入이 제대로 수합되지 못하는 점에 이르기까지를 현실적으로 목도하면서 그 改善案 마련에 苦心을 끊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가장 기초되는 生産의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입안과 집행에 이르는 전단계를 경험해온 실무가이자 學者로서 어떤 合理的 裝置가 없을까에 平生을 盡力해온 人物이라 할 것이다.

결국 중간단계를 책임지는 官吏들의 횡포와 苛斂誅求를 방지해야함을 중요한 과제로 관념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生産方式과 土地의 保有내지 管理方式을 바로 잡아야함을 기본된 과제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지금까지의 검토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閭田制와 井田制는 바로 이에 대한 方案으로 제시된 것이었으며, 그 基調는 과다해진 土地私有에 대한 비판과 함께 全體利益과 個人利益의 증대를 추구하는 土地 國·公 有觀의 확고한 設定이라 할 것이다.

물론 1800年代初를 前後한 시기인 만큼 商業도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며 手工業·鑛業등도 최소한의 경제적 역할을 市場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 갔다고 할 것이나, 역시 농업이 핵심이자 主가 되던 社會임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런만큼 茶山은 農業에 관심의 초점을 모을 수 밖에 없었으며, 특히 초기 地方官으로서의 경험과 中·後半의 流配地에서 관찰된 實際에서 土地制度의 改革을 통분스럽게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茶山은 이에따라 貧과 富의 差異를 최소화 하는데 관점을 모으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初期에는 마을(閭)단위의 共同勞動에 의한 共同分配의 형식이었으며, 後期에는 초기의 革新的 共同관념에서 보다 물러난 井田制 共同耕作이 되는 것이다. 즉 井田制에서 私的管理에 기초한 私有의 保障과 共同體 勞動을 통한

國家에의 租稅納付가 중요내용이 되는 것으로 租稅納付에 대한 댓가로 私的經營이 가능한 土地의 割當이라는 사유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런만큼 公的觀念으로의 접근이 土地의 기본적 성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또 茶山이 보이지 않게 중요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은 ‘근로 하는 백성’이라는 것이다. 閭田制에서도 閭長이 勞動의 시간 일수를 계산하여 收穫후 分배하게 하였으며, 후기의 井田制도 公田(租稅納付를 위해 共同으로 경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근로 내지 기여의 댓가로 私有의 지분을 나눠주게 되는 만큼 근로에 따른 댓가의 수령을 구조화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도 그에 따른 댓가를 받게 되며, 學者나 官吏도 社會全體의 이익을 위해 기여한 만큼에 따른 댓가의 지급을 기본적으로 관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방법적 어려움이 적지 않았으나, 특히 井田制에 대해서는 가능한 방법을 다각도로 제시하는 등으로 당시의 개혁상황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茶山이 읊은 많은 文學作品에서도 管理의 수탈과 백성과 餓死가 눈을 뜨고 볼 수 없다는 표현들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⁴⁸⁾

全體 人口의 극소수가 土地의 大部分을 장악함으로써 직접생산에 참여하는 대다수 無土백성의 땀과 피가 극소수 이들에게 철저히 획취되고 마는 실정에서 고민하는 한 知性人의 응결된 正義論이 茶山 土地觀의 요체이다.

그러기에 富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 나타나는 不均衡의 극단을 막고 이를 改善하는 정책으로 강토내 백성들이 일체를 형성하며 조화하도록 애쓴 결과의 일단이 바로 茶山의 閭田制며, 井田制論이 되는 것이다.

48) 茶山文學은 특히 社會批判의 도구로 쓰여진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洪以燮, 韓國史의 方法, 探究堂, 1968, 259~262면)

그리고 茶山의 文學作品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金相洪, 茶山 丁若鏞文學研究, 檀大出版部, 1986; 宋載邵, 茶山文學研究, 서울大博士論文, 1984; 茶山의 詩文學, 丁茶山研究의 現況(民音社, 1985) 223~295면 등을 참고할 수 있다.